

의안번호	2216000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2. 20.
추계번호	26A0164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4(공기열 히트펌프설비의 지원 및 성능기준 등)	(제1항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(총 공급 열량/총 소비전력량) 2.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 기준(부분 부하 운전, 계절별 부하 특성 등을 포함한다)을 충족하는 <u>공기열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</u> 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 기준·절차 및 그 밖에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6조의4(공기열 히트펌프설비의 지원 및 성능기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¹⁾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
1) 본 개정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5999)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

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히트펌프 보급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동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

○ 2026년 히트펌프 보급 관련 사업은 ‘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(난방 전기화 사업)’, ‘전력효율향상(사회복지시설 전기화)’ 사업 등이 있음

- ‘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(난방 전기화 사업)’은 무탄소 전기기반 난방(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전기히트펌프(EHP))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(설치비)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에는 국비 144.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,580 가구에 각각 560만원을 지원할 계획

※ [참고자료] ‘난방 전기화 사업’(기후에너지환경부)의 주요내용

- ‘전력효율향상(사회복지시설 전기화)’은 복지시설에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2026년 국비 12.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37개소에 각각 3,440만원씩 지원할 계획
-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4조(금융·세제상의 지원)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9조(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)

[표 1] 히트펌프 보급 관련 주요 현행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(코드)	회계기금	주요 내용	2026예산
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-난방 전기화 사업(1633-303)	환경개선 특별회계	화석연료 기반 난방에서 무탄소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여 주거부문 온실가스·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지원(자치단체 보조, 국비40%)	14,450
전력효율향상-사회복지 시설 전기화(5145-302)	전력산업 기반기금	화석연료 난방·급탕 에너지사용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비용 부담경감 도모를 위한 예산 요구	1,288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에 따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·운영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관련 사업이 수행 중이며, 정부(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합동)가 최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관련 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의 확대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정부는 “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,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”을 추진할 예정이며, 동 계획(「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」, 2025. 12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

추진전략 및 과제
1. 부문별/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
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단독주택·마을단위·복지시설·농업용 보급
② 에너지다소비업종·공공시설 대상 설치 확대
2. 보급 촉진 인센티브
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, 히트펌프 법적 지원근거 마련
② 가정용 히트펌프 인증기준 및 전기요금제 마련
③ ZEB 인증기준 변경 및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상 가중치 부여
④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건설기준 등 개정
3.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
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축소
② 다중이용건물/대규모 건물에 히트펌프 설치 가능토록 규제 개선
③ 히트펌프 설치 소비자 선택권 강화
4.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
① 대용량·초고온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
② 히트펌프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
③ R&D-제조-유지보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
④ 히트펌프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

자료: 관계부처합동, 「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...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」, 2025. 12. 16.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본 개정안은 김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5999)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‘난방 전기화 사업’(기후에너지환경부)의 주요내용

□ 사업 필요성

- 화석연료 기반 난방(저녹스 보일러)에서 무탄소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여 주거부문 온실가스·미세먼지 동시 저감

<주요 국가별 히트펌프 지원 현황>

 미국	 독일	 중국	 일본
■ 연방 세금 \$2,000 공제, 저소득층 \$8,000 환급	■ 가구당 최대 €21,000 지원(에너지효율프로그램)	■ 농촌지역 가구당 최대 CNY 25,000 지원	■ 가구당 기본 ¥ 5~15만 지원

□ 사업 내용

- (사업명) 난방 전기화 사업(전기히트펌프 보급사업)
- (사업비) '26년 국비 145억원(총 2,580가구 × 14백만원 × 40%)
 - ※ (보조율) 국고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- (사업대상 및 규모) 전국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
 - ※ 태양광 설치 여부 및 건물 단열 성능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구 선정
- (사업내용) 에너지효율 등이 높은 친환경 전기히트펌프*(EHP) 설치비** 지원
 - * 정의: 냉매(열을 옮기는 일을 하는 물질)의 증발-압축-응축-팽창 사이클을 이용하여 실외 따뜻한 공기의 열을 흡수해 이를 실내 난방이나 급탕에 이용하는 보일러
 - ** 가구당 총 설치비 14백만원 중 560만원(40%) 국비 지원
- (정책방안) 고성능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발굴